##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97

발의연월일: 2021. 5. 21.

발 의 자:위성곤·김승원·민형배

소병철 · 송재호 · 양정숙

오영훈 • 윤재갑 • 이개호

이용선 · 이원택 · 허 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국가는 제주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이념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있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을 토대로 국

유재산 사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이 개정 법률안에는 제주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무상사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96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양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기 사용허가 등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